

의안번호	2208450
의 퇴 인	나경원의원
회 답 일	2025. 6. 23.
추계번호	25B11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4조의11 (이용자의 이용·접속 장소 표시 등)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제1항 신설)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제4항 신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4조의11 (이용자의 이용·접속 장소 표시 등)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조치의무사업자의 이용자 이용·접속 장소 표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 점검(안 제44조의11 신설)

- 개정안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할 경우, 실태 점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조치의무사업자의 수, 실태점검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준, 실태 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이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현행법¹⁾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체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현행법 제47조제2항제1호²⁾에 따른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현황은 아래와 같음(사업자별 일평균 이용자수 통계는 미보유)

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2)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간통신사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표 1]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현황(2025년 6월 기준)

사업자명	매출액(억원)	사업의 종류
(주)데이콤크로싱	445	광대역국제회선 서비스 제공 플랫폼 및 홈페이지 운영
(주)딜라이브강남 케이블티브이	370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서비스 운영
(주)서경방송	466	인터넷서비스 운영(서경방송)
(주)엘지유플러스	132,385	유무선 통신서비스, IDC 서비스
(주)한국케이블 텔레콤	1,028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VoIP, MVNO)
드림라인(주)	1,471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ISP, VoIP, UMS, MVNO, VMS, 웹팩스)
삼성에스디에스(주)	51,668	IDC 운영(집적정보통신시설(IDC) 운영 서비스 및 보안관제, 네트워크 서비스), ISP 서비스 운영(물류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2,358	ISP, IDC, 정보통신서비스(스노우맨, 웹팩스, 메시지, 모바일 앱, 트로이켓)
아이디스파워텔 주식회사	516	P-Talk 서비스 인프라 운영
에스케이브로드밴 드 주식회사	42,819	초고속인터넷 I VoIP 등 ISP 서비스 운영
에스케이텔레콤(주)	125,892	T 전화, NUGU 서비스 운영
에스케이텔링크 주식회사	3,090	국제전화 모바일앱
에이피위성주식회사	494	위성이동통신 과금시스템 운영
주식회사 딜라이브	3,976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서비스 운영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	11,916	방송(TV), 인터넷(ISP), 인터넷전화(VoIP), 모바일(MVNO), 비전클라우드 등 인프라 운영
주식회사 케이티	183,714	KT ISP 인프라 운영
주식회사 케이티셋	1,821	위성정보통신 운영서비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